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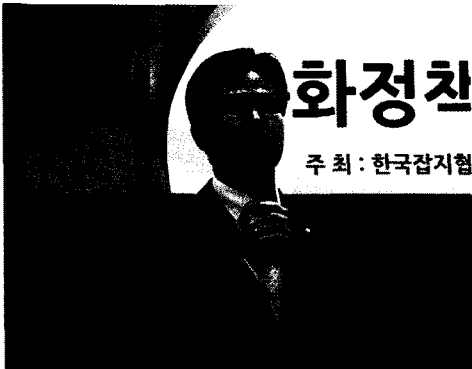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침해시 엄격한 제재 피할 수 없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따져보아야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9월 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1 잡지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속에서의 잡지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광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문화산업정책의 방향과 잡지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가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저작권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본지는 윤용근 변호사의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발제를 요약 정리한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최근 저작권법은 한미 FTA비준을 앞두고 그 보호 수준을 미국과 같은 정도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잡지는 대표적인 어문저작물인 동시에 편집저작물이기도 해 저작권 칼날을 쥘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다. 이에 본 저작권세미나에서는 잡지문화를 보호하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의 2차적 활용 및 업무상 저작물과 사진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양도 양수(계약서) 및 저작권 침해시 민 형사상 구제절차 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특히 잡지의 경우 인쇄물화된 이후 2차적 저작물(인터넷 게재, 전자책 출판 등)을 생성하거나 해외에 수출할 경우 저작권을 위한 계약서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용근 변호사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여기서 표현했다와 창작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논점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로 나뉜다. 원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은 가장 범위가 큰 저작물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말한다. 만화는 어문(이야기 스토리)과 미술(그림)로, 뮤지컬은 각본(어문), 가사와 악곡(음악), 안무(연극), 무대장치(미술)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둘의 경우 혼자서 한 작품을 창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공동저작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차적 저작물(저작권법 제5조)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디지털화(변형), 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춘향전의 경우 소설이 원저작물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 춘향전을 본 사람들의 경우 소설 춘향전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화와 소설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며,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종이잡지에 나온 내용이 인터넷으로 전환될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저작물 저작자에게 있다.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6조)은 교과서, 논문집, 문제집, 신문, 잡지 등을 말하며 원저작물을 개변함이 없이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과 배열 자체의 창작성이다.

잡지의 경우 많은 기고문을 받는다. 그것을 아무 생각없이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 눈에 보기 쉽게 편집을 다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잡지의 경우 편집저작권을 인정받고 있다.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여기서 인격권이란 모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작물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해 인격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인의 경우 시 한마디 한 줄을 위해 고뇌에 찬 고민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시에는 시인의 인격이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편집물도 마찬가지다. 원고(텍스트)와 사진을 어떻게 배열할까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잡지편집에서도 저작인격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이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 복제권이다.

복제권에서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만화에서 글과 그림 공동저작의 경우 제호를 변경해 전송시 전원합의가 있어야 한다. 실 예를 ‘지옥의 세레나데’라는 만화의 경우 공동저작자중 한명이 이름만 바꿔 마치 새로운 만화인양 인터넷(디지털)으로 전송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공동저작물인 경우 두 사람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모든 창작물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편집저작물에는 저작인격권이 포함돼 있는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이중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성명표시권이다. 잡지의 경우 외부원고를 받을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인격권안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이것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독자투고를 받았을 경우 임의로 축약 내지 삭제의 경우 사전에 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투고나 기고를 받을 때는 청탁서에 “잡지사정상 축약 내지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한 이용

우리가 원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나 신문, 입법, 지방의회 등에서 원저작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 작업을 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에도 제한을 뒤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잡지의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 23조에 나타나 있는데, 우선 재판절차, 입법, 행정행위를 위한 내부사용(23조)과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24조), 고등학교 이하 교육목적의 교과서 이용(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조)에서는 저작권에 제한을 둔다. 단 고등학교 이하라도 학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서는 저작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방송이나 신문 그밖의 보도를 하는 중에 자료화면에 서 보이거나 들리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잡지는 시사보도매체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창작시부터 생존기간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예를 들어 고호와 사갈의 페르디전을 구상할 경우 고호는 1890년 사망해 사망 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나온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에서 자유롭다. 단 사갈은 1985년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 후 50년이 지나지 않아 사갈 미술품을 사용할 경우 사갈 상속인에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출판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정된다. 단, 저작자와 계약시 출판권 존속기간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때 저작권자(예 사진작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저작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문구중 “일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일체라는 말안에는 1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이전이 안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로 작업해 해외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이 출판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게 돼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조(저작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번역권, 각색권, 영화화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저작재산권과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전자책, 오디오북, 영화, 드라마 및 장래의 새로운 매체에 의한 이용 등 모든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의미함)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전부를 영구적으로 ‘을’에게 양도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통상적으로 잡지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면 한글 엑셀 등 오피스제품들이 당연히 설치돼 있었다. 이렇게 사용한 프로그램 제품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만 있을 뿐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정품을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글이나 사진이 있을 경우 잡지를 발행하면서 그 글이나 사진을 게재한 경우 미필적 고의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업무상 저작물(사진저작물)

최근의 잡지에서는 사진이 없는 잡지가 없을 정도로 사진은 많이 쓰이는 저작물이다.

우선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면 예를 들어 A라는 사진기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이직한 곳에서 전에 근무했을 당시 찍었던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A사진기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직전의 잡지사에게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예 사진)의 저작자가 법인(예 잡지사)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법인, 단체 그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해 기획할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작성될 것,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잡지일 것,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등이다.

한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저작물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진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창조성과 개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화장품 용기촬영사진(대구지방법원 2006 고정4827)은 에센스 사진으로 화장품 내용물이 물결을 이루는 사진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진이 인기를 끌자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게재한 일이다. 이 사진은 에센스병안에 들어 있는 에센스가 물결을 이루는 것이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햄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함께 촬영한 사진(서울고등법원 96나 39570)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받았다. 우선 햄 제품과 함께 꽃과 와인, 촛불들을 함께 찍은 사진과 햄만을 찍은 사진중에서 햄 제품과 함께 다양한 배경장식물이 있는 사진은 저작물성을 인정받았으며, 햄 사진만을 찍은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저작물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다. 햄 제품과 함께 다양한 배경장식물이 있는 것은 저작물성을 인정을 받고 햄 사진만 있는 것은 저작물성을 받지 못했는데, 판사가 생각했을 때 햄 사진만 있는 것은 단순해보여서 자기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처럼 저작물성은 지극히 개인적 주관에 의해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